

# 2026년도 제4차 기업연구관 입주기업 모집 공고(수정)

도내 산학융합 활성화와 중소·벤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건립되어 기업 및 기관이 입주해 활발한 연구 및 기업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연구관 내에 입주할 바이오 관련 중소기업 및 유망 벤처기업의 연구소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6. 06. 01.

(사)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장

## 1 모집개요

○ 공고 호실: 총 4개 호실

구 분	호실	면적 (평)	비고
기업연구관 2관	203호	66.27㎡(20평)	2026년 7월 중순 입주 계약(예정)
	502호	66.27㎡(20평)	
	602호	64.42㎡(19.5평)	
	607호	44.86㎡(13.5평)	

※ 호실은 1개 호실 신청이 원칙이나 추가 호실이 필요할 경우 신청현황에 따라 심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

○ 입주기업 부담금

구 분	부과금액	비고
보증금	월 임대료의 12개월분	-
임대료	1㎡ 6,600원	연임대료 선납, 부가세 별도
관리비	실비정산	공동시설 포함

○ 모집대상

- 의료연구개발(의약품, 의료기기 및 보건의료기술)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
- 의료연구개발(의약품, 의료기기 및 보건의료기술)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·운영하는 기관 또는 기업

○ 선정기준 :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심사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연구개발 능력이 우수하며 재무구조가 건전한 기업 선정

○ 임대기간 : 최대 7년(최초 계약기간 2년 후 1년 단위 재계약)

※ 연구활동 및 입주부담금 미납내역 확인 후 재계약 / 7년 이후 추가 연장을 원하는 기업은 연장 심의를 통해 최대 3년 연장 가능

○ 임대용도 : 연구실험실 및 업무지원실(생산 시설 용도 미허가)

○ 입주계약 : 입주승인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 체결

○ 입주시기 : 입주승인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입주

## 2 입주신청 및 절차

○ 공고기간 : 2026. 06. 01.(월) ~ 2026. 06. 15.(월), 09:00 ~ 18:0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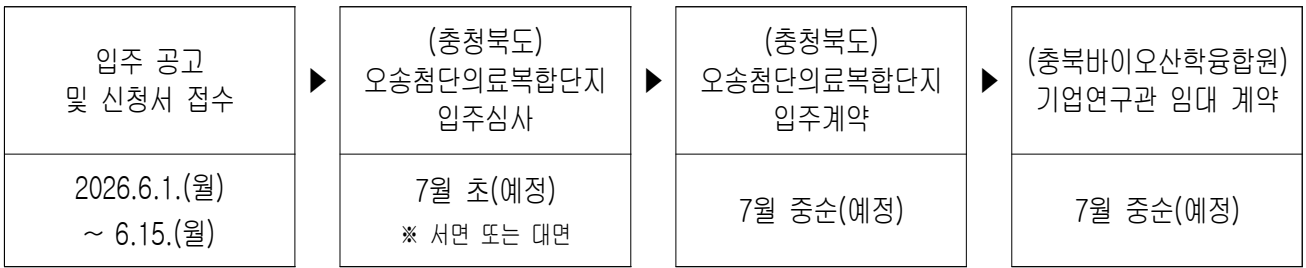
○ 접수방법 : 방문 및 우편접수(온라인 접수 불가, 마감일 18:00이전 도착분에 한함)

○ 접수처 :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-25 청주SB플라자 410호

○ 입주신청서류(호실별 원본 각 1부씩 제출)

순번	제출서류	비고
1	기업연구관 입주신청서	
2	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승인 신청서	
3	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심사 신청서	
4	의료연구개발 사업계획서	
5	의료연구개발인력 및 시설 명세서	
6	개인   사업자등록증 사본, 인감증명서, 대표자 주민등록등본, 각종 인허가증 사본	
	법인   사업자등록증 사본, 법인인감증명서, 법인등기부등본, 각종 인허가증 사본	
7	최근 2년간 재무제표증명원 및 손익계산서	해당시
8	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(연구개발 인력 및 연구기자재 현황 포함)	해당시
9	각종 논문 및 지식재산권 등 증빙서류	해당시
10	충북 지역 투자 MOU 등 협약 체결 관련 서류	해당시
11	기업 홍보 자료(카달로그, 브로셔 등)	해당시

○ 입주절차 ※ 심사 절차 및 입주 시기는 변경될 수 있음



※ 충청북도 입주심사위원회 심사규정에 의거 연구개발 능력이 우수하며 재무구조가 건전한 기업을 선정하며, 적격입주기업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

※ 입주심사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, 신청서 접수 마감 후 담당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

○ 문의 : (사)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행정지원실 강지애 주임 (☎043)220-1023)

○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입주신청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입주승인을 취소 할 수 있음

### 3 기타 유의사항

○ 입주 및 사용자의 의무

- 입주 및 사용자는 운영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.
- 입주 및 사용자는 사용시설 및 부속시설을 보호 유지해야 하며 전기, 수도, 냉·난방을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.
- 시설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.
- 입주 및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및 부속시설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는 이를 변상해야 한다.
- 입주 및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.
  1. 사용권의 양도, 전대 또는 이에 유사한 일체의 행위
  2. 시설물 및 부속시설의 구조변경 등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단, 사전에 사무국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.
  3. 시설 내에 위험물의 사용 및 보관 또는 타사용자에게 해를 미치게 하는 행위
  4. 센터 외부에 별도의 사인물을 설치하는 행위. 단, 사전에 사무국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.

○ 도배, 유리, 전구교체 등 경미한 부품으로서 단순한 작업으로 교체 가능한 수리비는 입주자의 부담으로 함

- 입주자 소요 물품, 시설물은 임대계약 만료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물품, 시설물 등에 대한 비용(권리금)을 요구할 수 없음
- 입주기업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을 범하였을 때에는 입주계약의 효력을 상실하고 즉각 퇴거할 수 있음
  - 가. 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하는 등 입주계약을 위반한 경우
  - 나. 세금체납 및 도산 등으로 강제집행, 파산, 화의개시, 회사정리 절차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통지를 받아 지속적인 기업경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
  - 다. 폐수, 소음, 악취, 진동 등 공해의 과다 발생 및 업무방해 등으로 타 입주자의 사업활동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
  - 라. 사무국 직원이나 타 입주자에게 폭언, 폭력, 협박 등으로 업무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
  - 마.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무국의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

붙임 기업연구관 입주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1부. 끝.